

(가칭)중구 학성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

의안 번호	257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3. 24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(가칭) 중구 학성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명 : (가칭)중구 학성동 재개발사업
- 나. 위치/면적 : 학성동 156-16번지 일원 / 81,385㎡
- 다. 건폐율/용적률 : 17.12%/249.47%
- 라. 세대수 : 1,386세대
- 마. 주요내용 :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

3. 근거법규

- 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
- 나. 「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7조제1항

4. 참고사항

- 가.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 청취
- 나.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,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

5. 붙임

- 가. (가칭)중구 학성동 재개발사업 위치도 및 정비계획 결정안
- 나. 근거법규
- 다. (가칭)중구 학성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(별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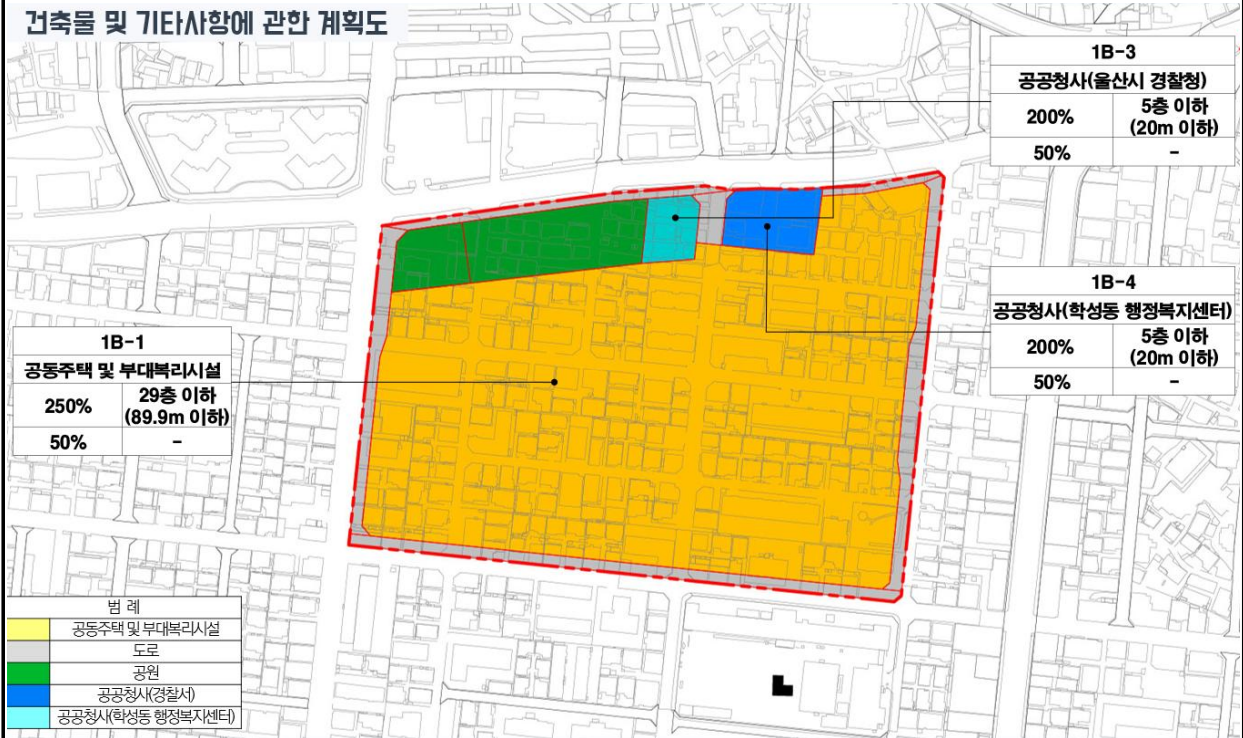
붙임 가 (가칭)중구 학성동 재개발사업 위치도 및 정비계획 결정안

사업명	(가칭)중구 학성동 재개발사업	위 치	학성동 156-16번지 일원
내 용	위치도	비 고	



내 용	사업계획(안)
-----	---------

구 분		내 용	비 고
사업규모	정비사업면적	81,385.0㎡	
	공동주택	13개동, 지하3층 ~ 지상 29층	
	주민공동시설	경로당, 보육시설, 어린이놀이터 등	
건 축 면 적		10,891.03㎡	
연 면 적		247,094.58㎡	
주 차 대 수		2,050대	
세 대 수		1,386세대	

내 용	정비계획(안)	비 고		
<p>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도</p> 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div data-bbox="145 622 391 750"> <p>1B-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0% 29층 이하 (89.9m 이하) 50% -</p> </div> <div data-bbox="1134 331 1393 459"> <p>1B-3 공공청사(울산시 경찰청) 200% 5층 이하 (20m 이하) 50% -</p> </div> <div data-bbox="1134 562 1393 689"> <p>1B-4 공공청사(학성동 행정복지센터) 200% 5층 이하 (20m 이하) 50% -</p> </div> </div> <div style="margin-top: 10px;"> <p>범 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도로 공원 공공청사(경찰서) 공공청사(학성동 행정복지센터) </div>				
구 분	면 적(m ²)	구성비(%)	비 고	
합 계	81,385.0	100.0		
공동주택용지	63,612.0	78.2		
복합용지	63,612.0	78.2		
정비기반시설용지	14,269.0	17.5		
도 로	8,184.0	10.0		
공 원	6,085.0	7.5	주차장(중복결정) 1,670m ² , 2.1%	
공공청사	3,504.0	4.3		
공공청사1	1,300.0	1.6	울산시 경찰청	
공공청사2	2,204.0	2.7	학성동 행정복지센터	

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제15조(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)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□ 「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

제7조(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류) ① 구청장등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(변경)신청서
2. 정비구역의 지정(변경)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
 - 가.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공람·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
 - 나. 별지 제3호서식의 구·군의회 의견청취내용
 - 다.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조서
 - 라. 별지 제5호서식의 기초조사결과 정리내역서